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공적 입양체계 전환기 영국(잉글랜드)의 입양·아동보호 체계 운영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전문가 면담을 통한 국내 공적 입양체계 안착 방안 모색

☐ 과제명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연구

☐ 출장기간

2026.08.31.(월)~2026.09.05.(토)

☐ 출장국가(도시)

영국(런던, 옥스퍼드(9/2))

☐ 출장자

이주연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8.31	영국(런던)			현지 도착 및 면담 준비
09.01	영국(런던)	교육부(DfE)	Emma Davis, Thomas Freeman 외	잉글랜드 입양·위탁·보호종료 정책 청취 (주요일정①)
09.01	영국(런던)	Adopt London North	Lydia Samuel 외	공공 직영 지역입양기관(RAA)의 결연·사후지원 실무 (주요일정②)
09.02	영국(옥스퍼드)	옥스퍼드대학교 Rees Centre	Julie Selwyn	입양 연구 근거 검증 및 정책 지표 자문 (주요일정③)
09.03	영국(런던)	CoramBAAF	James Bury, Jane Poore	전국 입양제도의 구조·표준·데이터 총괄 청취 (주요일정④)
09.03	영국(런던)	Coram	Cathrine Clarke, Awaz Raoof 외	민간입양기관(VAA) 운영 모델과 국제입양 실무 (주요일정⑤)
09.04~09.05	한국(인천)			귀국(09.05. 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영국 교육부 방문
일 시	09.01. 10:00~12:00
장 소	영국 교육부(DfE, 런던)
참석자	원외: Emma Davis(입양 담당자), Thomasin Freeman(입양, 대안양육 담당 부서장), Simran Panesar, Ashlen 원내: 이상정, 이주연
☐ 잉글랜드 입양·대안양육 정책 총괄 부서 면담 ○ 입양·가족사법·대안양육(Alternatives to Care) 담당 부서의 역할과 정책 추진 방향을 청취하고, 한국의 공적 입양체계 전환(20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소개함. - 위탁정책, 16~17세 지원주거(supported accommodation) 제도, 보호종료 청년 지원 정책을 각 담당자가 발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 위탁가정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영국에서도 위탁부모를 위한 복지제도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음. 이에 더하여 연금 등의 제도를 고려중임. - 영국은 최근 지역(지자체)별 입양기관을 권역화하는 지역중심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중심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해왔음.	
☐ 보호종료 청년 지원 정책 ○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 지원 체계와 Staying Put 등 연장 지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논의함. - 가정외보호에서 성인기 이행 과정의 지원 공백과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후속 조치 ○ 입양 적시성 지표, 배치명령 대기 아동·승인 양부모 통계, 입양·특별후견지원기금(ASGSF) 등 공표 통계의 출처 안내를 요청함(담당 부서 회신)	
②	Adopt London North(공공입양기관) 방문
일 시	09.01. 14:00~15:45
장 소	Adopt London North (The Laycock Centre, Islington, 런던)
참석자	Lydia Samuel(서비스총괄·기관결정권자), Teresa(입양실무 담당자), 이주연

□ 공공 직영 지역입양기관(RAA)의 운영 구조

- 북런던 6개 자치구가 공동 설치한 공공 직영 RAA로, 모집·가족찾기·사후지원 3팀 체제(직원 40명, 사회복지사 25~26명)로 연간 약 40명을 배치함.
- 2002년 입양아동법의 유산(아동의 전 생애 복리 심사, 비혼·동성 커플 개방, 특별후견 신설)이 입양 감소의 구조적 배경으로 설명됨. 현재 양부모 구성은 동성 커플 40%, 이성 커플 40%, 1인 20% 수준.

□ 결연(매칭)·예비양부모 준비 실무

- 입양패널은 결연을 만들지 않고 검증만 수행하며, 실무진과 예비양부모가 결연을 공동 구성함. 예비양부모는 아동 서류 전체를 열람하고 위탁부모·어린이집·소아과 면담 후 결정하며, 상호 거부권을 보유함.
- 본 교육 4일+추가 2~3일의 대면 소그룹(12~16명) 교육을 운영하며, 당사자(경력 양부모·성인 입양인)의 서사가 태도 변화의 핵심 기제로 제시됨. 예비입양부모의 준비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음.
- 친생가족과의 직접 접촉에 대해 승인 양부모 전원이 지지하는 수준으로 전환되었으며, 법원도 접촉 계획 없는 배치를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 중임.

□ 결연 곤란 아동과 사후지원

- 배치 아동의 약 절반이 결연 곤란 아동이며, 전국 DB를 통한 원거리 결연과 입양수당(사례: 주당 218파운드, 18세까지)으로 대응함.
- 사후지원은 기간 제한 없는 법적 권리로 설계되었으며, 입양 후 재보호된 아동에 대한 전수 감사를 6개 자치구와 공동 진행 중임.

□ 한국에의 시사점

- 배치 체계의 통합(입양·위탁·친족돌봄·특별후견의 단일 체계)과 '처음부터 권리로 설계된 지원'의 중요성이 제언됨. 아동 준비 대화 지침서 2권을 증정받았으며, 배치 통계와 교육 커리큘럼 송부를 약속받음.

③	옥스퍼드대학교 방문(Julie Selwyn 명예교수 면담)
일 시	09.02. 14:00~15:30
장 소	옥스퍼드대학교 Rees Centre(옥스퍼드)
참석자	원외: Julie Selwyn(교육·입양 명예교수, CBE) 원내: 이상정, 이주연

- 법원 절차와 조기 영구성(early permanence)의 연구 근거
- 보호신청부터 배치명령까지 목표 26주 대비 실제 약 35주가 소요되며, 배치 후 입양명령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림. 지연 요인은 항소·전문가 증거 다툼, 방임 입증의 어려움.
 - 2세 미만의 안정 애착이 파양과 성인기 정신건강의 결정 변수라는 신규 연구 결과가 소개됨. 조기 영구성 양육자는 법원 결정 전까지 위탁부모 신분으로, 아동을 떠나보낼 수 있음을 알고 동의하는 부모들로 구성되며, 많지는 않으나, 이러한 조건을 알면서도 응하는 예비양부모들이 상당 수 존재함.
- 파양 연구와 입양아동의 욕구
- 전국 전수 기준 파양률은 약 3%이나, 유지 가족의 3분의 1은 극심한 대가를 치르며 가정을 유지함.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으며 지원은 대처를 돕는 것이라는 관점이 강조됨.
 - 영국의 입양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 욕구를 지니며(자폐스펙트럼 15%, 학대·방임 경험 75%, 성학대 추정 20%), 태아알코올 증후군은 학령기에야 발현되는 진단의 어려움이 있음.
- 포기(relinquishment) 아동의 국제 비교
- 잉글랜드의 포기 아동은 전국 연간 약 20건 수준으로 한국과 극명히 대비됨. 한국의 미혼모 낙인이 잉글랜드 1960~70년대 강제입양과 동일한 구조임이 지적됨.
- 한국 기본계획에 대한 직접 권고
- ①구 민간기관 실무 인력의 재영입(“적이 아니라 자원“) ②예비양부모 교육 도입(“아기도 백지가 아니다“) ③공정적 양부모 지지 네트워크 구축 ④결연 패널의 중장기 지역화 ⑤국제입양연구학술대회(ICAR) 참가가 권고됨.
 - 보호종료 분야에서는 잉글랜드의 자체 평가(“매우 못함“), Staying Put · Staying Close의 자원 한계, 전문가-당사자 간 지표 괴리(주거 적합성 90% vs 70%)가 공유됨.

④	CoramBAAF(잉글랜드 입양기관 협의체, 실무자 교육기관) 방문
일 시	09.03. 12:00~13:30
장 소	CoramBAAF (41 Brunswick Square, 런던)
참석자	원외: James Bury(정책·연구·개발 총괄이사), Jane Poore(입양 컨설턴트) 원내: 이주연

- 잉글랜드 입양제도의 전국 구조
 - 교육부(DfE, 규정 2005·지침 2013으로 노후화) — Adoption England(RAA 협의체에서 공식화, 연간 약 900만~1,000만 파운드 위임) — RAA(법적 근거 부재, 법정 권한·의무는 지방정부에 잔존, 결연 최종 서명은 지방정부 ADM) — 민간입양기관(VAA, 약 20~22곳)의 4층 구조로 정리됨.
- 예비양부모 사정(assessment)의 소요기간과 개편
 - 1단계 8주(정보 수집, 접수 거절 불가)+최대 6개월 공백 옵션+2단계 4개월(ADM 확정까지)로 확인됨. 병목은 범죄경력조회(DBS, 5~6개월 지연 사례)이며, 단계별로 연속적인 운영 등 양부모 평가와 관련된 절차의 개편을 Adoption England와 진행 중임.
- 사후지원 기금과 특별후견 쟁점
 - 입양·특별후견지원기금(ASGSF)은 총예산 5,000만 파운드 수준이나, 회계연도 말 무공지 갱신으로 치료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지적됨. 십대용으로 설계된 특별후견이 영아에게 사용되는 오남용 사례도 논의됨.
- 지역화(RAA 전환)의 경험과 조언
 - 자율 설계 방식의 지역화는 지역주도기관과 지역일반기관 간의 분쟁·서식 다툼 등 소모전을 초래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에는 ‘모텔을 주고 자율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직접 조언이 제시됨.
 - 기록 관리는 RAA 신설로 이원화·중복이 발생했으며, 국가 사과를 계기로 기록 소재 통합 웹사이트를 11월 구축 중임.
- 한국에의 시사점과 후속 협력
 - “입양은 아동기에 일어나는 한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 — 입양인에 대한 평생 지원 체계와 재원, 스웨덴형 정기 확인(1·3·5·10년) 체계가 권고됨. 사정 서식 견본, 국가별 사정 방식 국제비교 문서 등 자료 송부와 향후 자문 협력 의사를 확인함.

⑤ Coram(민간 입양기관) 방문

일 시	09.03. 15:00~17:00
장 소	Coram (Brunswick Square 캠퍼스, 런던)
참석자	원외: Cathrine Clarke(입양·가족 총괄이사), Awaz Raoof(Coram International 부국장), Freya Allery(Coram International 선임연구원) 원내: 이주연

- 민간입양기관(VAA)의 운영 모델
 - Coram은 민간입양기관(VAA)이면서 런던 일부 지역의 RAA(Ambitious for Adoption)를 위탁 운영하는 독특한 모델로, 승인·준비 절차와 공공-민간 결합 구조를 청취함.
 - RAA가 권역 내 배치를 우선하는 구조에서 VAA에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욕구의 아동이 배치되며, 그 결과 사정·사후지원의 심층 전문성이 VAA에 축적된다는 평가를 확인함(기관간수수료 구조 포함).
 - 아동의 배치 이동 횟수가 파양과 상관을 보이는 선행 지표라는 점, 전국 입양 데이터 수집을 Coram이 정부 계약으로 수행한다는 점이 소개됨.
- Coram International의 국제 업무
 - 국제 아동권리 법률 연구·자문 기능과 유럽·중아시아 장애아동 관련 보고서 등 주요 산출물을 공유받고, 한국 관련 협력 가능성을 논의함.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실무 적용과 잉글랜드의 국외입양 축소 경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후속 조치
 - 관련 데이터·표준 링크 및 보고서 송부 제안함.

①



②



③	
④	RE: FW: Visit request — Korean delegation. learning from CoramBAAF, 3 Sept 2020  Jane Poore <...> 받는 사람: 이주연 <danielle.sawyer@corambaaf.org.uk>, James Bury <...> Dear Juyeon,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oday, it was a pleasure meeting you. Also thank you for the beautiful gifts. I will put together an email with links to the various documents and references we discussed (possibly tomorrow, but maybe next week) Do ask if you think we can help in any way at all. Wishing you a safe journey home tomorrow, Best wishes, Jane Jane Poore Adoption Consultant corambaaf.org.uk     CoramBAAF, Coram Campus, 41 Brunswick Square, London WC1N 1AZ Registered Company no. 9697712
⑤	전체 답장 ▾ 삭제 보관 이동 ▾ 서비스 등록 ▾ AI ▾ ☆ 🖨️ ↗️ ↔️ Re: RE: visit request 3 September  Awaz Raouf <...> 받는 사람: 이주연 참조: Cathrine Clarke <cathrinec@coram.org.uk>, Freya Allery <freya.allery@coramdc.org.uk> Dear Juyeon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today. Please see the following link for the evaluation reports on childcare and deinstitutionalisation reforms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at I mentioned. You may find th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tackling some of the issues that you raised at our meeting. https://www.coram.org.uk/resource/multicountry-childcare-deinstitutionalisation-reforms-ecaro/ I hope this is helpful and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if we can help further. Best wishes Awaz